

충북 행복결혼공제사업 시행 계획

- 중소(중견)기업 미혼근로자의 안정적인 결혼유도를 통한 출산율 제고 및 중소(중견)기업 근로자 장기근로 유도

I 추진 계획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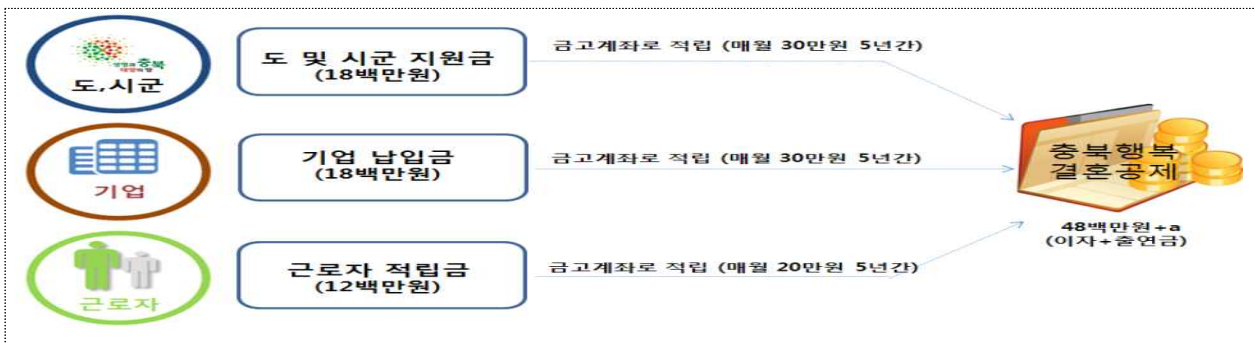
1. 사업개요

- 사업기간 : 2018. 3월 ~ 2023. 2월(5년간)
- 지원인원 : 12명
- 총사업비 : 576백만원 (5년) *시군매칭 (도:시군 50:50)
 - 재원분담 : 지방비 216백만원(도 108, 군 108), 기업 216백만원, 근로자 144백만원
 - ※ 분담비율 : 지방비 37.5%(도 18.75%, 시군 18.75%), 기업 37.5%, 근로자 25%

월 80만원 적립(도15, 시군15, 기업30, 근로자20) × 60개월 → 48백만원 + α

- 2018 사업비 : 96백만원 (도 18, 군 18, 기업 36, 근로자 24)
- 지원기간 : 공제 가입일로부터 5년
- 운영기관 : 충청북도 / 시군 *도금고 협약(매칭계좌 운영)
- 지원내용
 - 중소(중견)기업에서 근무하는 미혼근로자가 매월 일정액을 5년간 적립하면 충청북도 및 시군, 기업에서 매칭적립하여 기간 내 본인 결혼시 만기 후 목돈(원금+α) 지급

2. 사업체계도



II 세부 추진계획

1. 적립금액

- 적립액 : 월80만원(도 15, 시군 15, 기업 30, 근로자 20)
- 적립기간 : 신청한 날이 속한달 익월부터 60개월(5년)
- 지급액 : 48백만원 + α (이자)

2. 지원대상

근로자

○ 신청대상

(기준연령) 18세 이상 40세 이하

※ 근로기준법 상 18세 이상 근로 가능

(거주제한)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영동군에 거주하는 자

(혼인여부) 법률상 미혼인 자(이혼, 사별 등 포함)

(근무지) 충청도에 소재하는 제조업종 중소기업(중견)기업 근로자

※ 한국산업표준분류상 제조업(분류코드 : C10~34)

(사업주의 동의) 사업주의 추천 또는 동의를 받은 자

○ 관할시군(사업비 매칭) : 근로자 주소지(영동군) 기준

기업

○ 신청대상

- 「중소기업법상」 중소기업과 「중견기업법」상 중견기업으로서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을 고용하는 기업

《 중소기업(중견)기업의 범위 》

(근거 : 중소기업법, 중견기업법)

구분	자격기준	비고
중소기업	자산총액 5,000억원 미만 연매출액 1,500억원 이하(업종별 상이)	중소벤처기업부 인정 (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)
중견기업	자산총액 5,000억원 이상 또는 연매출 1,500억원 초과	산업통산자원부 인정 (중견기업 정보마당)

※ 대기업 : 중소기업법 및 중견기업법에 속하지 않고 ①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으로 ②자산 10조원 이상인 기업

- 지원 업종 : 제조업(한국표준산업분류 코드 C10~34)

※ 시범사업으로 제조업에 한해 지원, 추후 사업 확대 시 타업종 확대 검토 등

○ 참여제한

- 사업주(기업 대표) 및 직계비속, 형제·자매 관계에 있는 자
-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자
- 제조업종(한국표준산업분류 C10~34) 외 기타업종
- 대기업 및 총 종사자수 5인 미만 업체
- 휴·폐업중인 기업
 - ※ 단, 재해를 직접 원인으로 휴업중인 기업은 가동중인 기업으로 간주하여 가입대상에 포함
- 5년 미만 계절적·일시적 인력수요 사업체
 - ※ 적립기간을 고려하여 최소 5년 이상 근로자가 대상
- 폐이퍼컴퍼니 등 안정성이 없는 기업

□ 기업별 신청인원

- 기업당 1명 신청

□ 지원대상(기업 및 근로자) 선정

- 1차 : 기한 설정 후 공개 모집

- 신청기업 초과시 기업 평가표(붙임3)에 의거 선정

[기업 평가표 항목]

- | | |
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
| ① 고용창출우수기업(25점) | ② 가족친화인증기업(20점) |
| ③ 충북중소기업대상 수상(15점) | ④ 종사자수(15점) |
| ⑤ 연간 총매출액(10점) | ⑥ 설립일 기준 운영기간(10점) |
| ⑦ 사회공헌도(5점) | |

- ※ 동점 발생시 평가표 항목 ①→②→③→④→⑤→⑥→⑦ 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선정

- 2차 : 1차 공개 모집 후 신청 기업 미달 시 예산 소진 시까지 공개 모집

- ※ 1차 공모 시 선정 기업 재신청 불가

3. 유형별 지원방법

가입기간	유형	지원내용
5년 만기시	결혼한 경우	· 48백만원(원금) + α(이자) [본인(○), 기업(○), 도·시군(○)]
	결혼 안한 경우	· 12백만원(원금) + α(이자) [본인(○), 기업(×), 도·시군(×)]
중도해지시	폐업	· 결혼시 퇴사일까지 적립액(+이자) 지급 [본인(○), 기업(○), 도·시군(○)] · 기간내 미결혼시 본인적립금만 지급
	이직	· 본인적립금만(+이자) 지급 [본인(○), 기업(×), 도·시군(×)]
	기업부담금 중도 미적립, 기업체 타시도 이전	· 본인 및 기업적립금만(+이자) 지급 [본인(○), 기업(○), 도·시군(×)]
	자의해지 등 (근로자 태세 전출, 무직, 자영업, 압류 등)	· 본인적립금만(+이자) 지급 [본인(○), 기업(×), 도·시군(×)]

< 기타유형 >

(유형1) 공제 만기 전 결혼시 공제금 선지급 가능 여부?

☞ 공제상품의 만기가 5년으로 채원문제로 선지급은 어렵고 도금고와 협약을 통해 일반대출보다 우대금리가 적용된 특별 신용대출 연계 제공

(유형2) 본인 희망으로 도내 소재 타기업체 이직시 혜택 여부?

☞ 기업이 장기근로 취지에 반하므로 본인 적립금만 지급

(유형3) 5년 만기시까지 결혼을 하지 않은 경우 유예 가능 여부?

☞ 만기후 지급신청 1년간 유예기간을 두어 기간내 결혼시 매칭금 전액 지급가능

(유형4) 근로자가 도내 타 시·군으로 주소 이전시?

☞ 주소이전일이 속한 달까지 기존 시·군에서 지원하고 이전일 익월부터 이전한 시·군에서 지원 (근로자의 주소지 시·군 매칭 사업)

(유형5) 근로자가 타 시·도로 주소 이전시?

☞ 본인 적립금만 지급하고 지방비 및 기업 매칭금은 환수

(유형6) 근로자가 기업부담금까지 부담할 경우 공제에 가입 가능?

☞ 본 공제사업은 노-사-정 협력사업으로 기업의 참여가 없을 경우 가입 불가

해지는 충북도 및 시군 확인 후 충북도의 지급신청에 의해서만 지급되며, 근로자의 해지금액은 공제가입(변경) 신청 시 등록된 연결계좌로 입금되고, 만기 후 1년간 지급신청을 유예할 수 있음

▶ 지급신청 : 근로자 및 기업체→근로자 주소지 시·군→충북도→도금고

※ 만기 1년후까지 지급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, 충북도 및 시군 직권으로 근로자(본인의 납입금과 이자), 기업(기업의 납입금과 이자) 지급함

(원칙) 5년 만기 기간내 결혼하고, 해당 기업 근속시 전액 지급
(예외) 중도해지시 사유에 따라 매칭금 차등 지급

□ 5년 만기

○ 결혼을 했을 경우

- 원금(본인, 기업, 지방비) 및 이자 전액 지급
- 기간내 결혼하더라도 5년 만기까지 적립후 만기시점에 지급
- ※ 혼인관계증명서, 재직증명서 등 첨부 시군청 신청 → 충북도 → 도금고(개별 송금)

○ 결혼을 안했을 경우

- 본인부담금 및 이자만 지급
- 단, 본인이 희망시 1년간 지급신청 유예가 가능하며 유예기간 중 결혼시 공제금 전액 지급

□ 중도해지

○ 폐업

- 폐업일 기준 결혼했을시 퇴직일까지 적립된 원금 및 이자 지급
- 폐업일 기준 미결혼시 퇴직일까지 적립된 본인부담금 및 이자 지급

○ 이직

- 공제금을 지원하는 기업의 장기근속 유도 취지에 반하므로 근로자 본인부담금만 지급 ※ 지방비 및 기업 납입금은 반환

○ 기업부담금 중도 미적립, 기업체 타 시도 이전

- 기업의 어려움 등 사유로 기업이 기업부담금 계속 적립 의사가 없을

경우 및 기업체 타 사·도 이전 시 적립된 기업부담금은 근로자에게 지급 ※ 지방비 환수

○ 자의해지 등

- 자의해지(퇴사 후 무직 또는 자영업 포함) 시 해지일까지 본인적립금 및 이자만 수령
- 저축액에 대한 압류 등 권리하자(침해) 발생 시 본인적립금 및 이자만 지급 ※ 지방비, 기업부담금 환수

□ 특별 신용대출(도금고)

근로자가 공제 만기 전 결혼 할 경우 결혼 비용 충당을 위해 본인이 원할시 일반대출보다 **자격요건 완화** 및 **우대금리가 적용**된 특별 신용대출을 연계하여 지급

○ 요 건 : 공제에 가입한지 2년 이상 된 공제금 성실납입자

- 이직 및 신용등급 확보를 위해 2년 이상 공제 적립자에 대해 선지급 적용
- 2년 미만 공제가입자의 경우 거래 실적 및 신용부족으로 금리우대 불가

○ 대출종류 : 특별 신용대출

※ 대출금은 개인 신용도에 따라 차등 적용

○ 신청방법 : 농협은행(충북도청 출장소) 방문 신청

○ 상환방법 : 만기시 공제적립금으로 대출금 상환

○ 혜택

- 기존 대출상품보다 0.5%이상 우대 금리 적용
※ 금리수준은 대출시 이자에 따라 변동

- 신용대출 대상의 자격기준 완화(신용등급 4등급 → 5등급까지 확대)

○ 만기전 공제 해지시 : 일반 대출로 전환 근로자 전액 상환

※ 지방비, 기업부담금 반환, 대출 전액 근로자 상환

4. 공제금 및 계좌의 운영

□ 공제금 운영

- (공제) 매월 공제금을 도금고 통합계좌로 적립
- (지급) 매월 3자(지방비, 기업, 근로자) 매칭금을 확인 후 개인계좌로 지급(거래정지계좌)

□ 계좌운영

- (개인계좌) 1인당 1개의 본인명의 계좌 개설
- (통합계좌) 도금고(충청북도 부기) 계좌를 운영하여 공제금 및 매칭금 관리

【공제금 매칭 절차】

- ▶ 시군, 기업, 근로자 → 도금고 명의의 가상계좌로 입금
- ▶ (도금고) 3자(지방비, 기업, 근로자) 입금 확인 → 근로자 명의 개인 통장으로 입금(본인부담금 및 매칭금)

- (거래정지계좌) 근로자명의로의 개인계좌는 거래정지 계좌*로 운영
 - * 거래정지계좌 : 도·시군과 도금고의 협의(공문)에 따라 지급 및 해지가 가능, 근로자 임의로 입출금 불가
- (중도해지) 기업 또는 근로자가 연속 3회 이상 또는 공제기간중 총 10개월 이상 공제금 미입금시 시군에서는 기업 및 근로자에게 중도해지를 통보할 수 있음
 - ※ 근로자 미부담시 본인 납입금만 지급, 기업 미부담시 기업부담금 근로자에게 지급 (도시군 부담금 환수)
- (납입유예) 기업의 경영상황 및 근로자의 사정으로 인해 사전에 공제금 납입 유예신청을 통하여 시군의 승인을 득하고 최대 6개월간 연장 가능
 - ※ 납입유예 승인은 시장·군수 재량에 의해 판단(기업의 경영상황, 근로자의 질병 등 종합적으로 고려)

붙임1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

□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

제3조(중소기업의 범위) ① 「중소기업기본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조 제1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으로 한다. <개정 2014.4.14., 2015.6.30., 2016.4.5., 2016.4.26., 2017.10.17.>

1.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일 것

- 가.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과 해당 기업의 평균매출액 또는 연간 매출액(이하 “평균매출액등”이라 한다)이 별표 1의 기준에 맞을 것
- 나.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일 것

별표1)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중소기업 규모 기준

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	분류기호	규모 기준
1. 의복,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	C14	평균매출액등 1,500억원 이하
2. 가죽, 가방 및 신발 제조업	C15	
3. 펄프,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	C17	
4. 1차 금속 제조업	C24	
5. 전기장비 제조업	C28	
6. 가구 제조업	C32	
7. 농업, 임업 및 어업	A	평균매출액등 1,000억원 이하
8. 광업	B	
9. 식료품 제조업	C10	
10. 담배 제조업	C12	
11. 섬유제품 제조업(의복 제조업 제외)	C13	
12.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(가구 제조업 제외)	C16	
13. 코크스,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	C19	
14.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(의약품 제조업 제외)	C20	
15.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	C22	
16. 금속가공제품 제조업(기계 및 가구 제조업 제외)	C25	
17. 전자부품, 컴퓨터, 영상,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	C26	
18.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	C29	
19.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	C30	
20.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	C31	
21. 전기, 가스,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	D	
22. 수도업	E36	
23. 건설업	F	
24. 도매 및 소매업	G	

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	분류기호	규모 기준
25. 음료 제조업	C11	평균매출액등 800억원 이하
26.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	C18	
27.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	C21	
28.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	C23	
29. 의료, 정밀,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	C27	
30. 그 밖의 제품 제조업	C33	
31. 수도, 하수 및 폐기물 처리, 원료재생업 (수도업 제외)	E	
32. 운수 및 창고업	H	
33. 정보통신업	J	
34.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	C34	
35. 전문,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	M	평균매출액등 600억원 이하
36. 사업시설관리,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(임대업 제외)	N	
37.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	Q	
38. 예술,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	R	
39. 수리(修理)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	S	평균매출액등 400억원 이하
40. 숙박 및 음식점업	I	
41. 금융 및 보험업	K	
42. 부동산업	L	
43. 임대업	N76	
44. 교육 서비스업	P	

비고

-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「통계법」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.
- 위 표 제19호 및 제20호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용 신폼 의자 제조업(C30393), 철도 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(C31202) 중 철도 차량용 의자 제조업,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(C31322) 중 항공기용 의자 제조업의 규모 기준은 평균매출액등 1,500억원 이하로 한다.

□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- “중견기업”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.

-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닐 것
-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, 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른 지방공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아닐 것
- 그 밖에 지분 소유나 출자관계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업

붙임2 기업 평가표

구 분	항 목	점수	비고
합 계		100	
①고용창출우수기업	고용노동부 및 충북도 인증 고용우수기업	25	지정(인증서 유효기간(2년)내
②가족친화인증기업	여성가족부 가족친화인증기업	20	지정(인증서 유효기간(5년)내
③중소기업대상기업	충청북도중소기업대상 수상기업	15	최근 3년간
④종사자수	5인~20인이하	15	1
	40인 이하		5
	80인 이하		10
	80인 초과		15
⑤연간 총매출액	5억원 이하	10	1
	30억원 이하		4
	100억원 이하		7
	100억원 초과		10
⑥운영기간	1년 이하	10	1
	3년 이하		4
	5년 이하		7
	5년 초과		10
⑦사회공헌도	기부 실적이 있을시	5	3
	봉사활동 실적이 있을시		4
	기부+봉사활동 실적이 있을시		5